

의안번호	제 381 호
의결 연월일	2016. . . (제 회)

**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**

발의자	박종규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6년 4월 18일

#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(박종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8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6년 4월 18일

제 출 자 : 박종규, 박봉순, 박한범  
임병운, 장선배, 최병운  
윤은희

## 1. 제안이유

- 충북발전연구원의 명칭을 “충북연구원”으로 변경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가치 영역의 연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환경, 농업, 문화, 자치, 디자인 등 포괄적인 분야의 종합적 조사·연구를 수행하는 충북지역 종합연구기관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,
- 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이사추천 및 재산운영 및 관리에 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그 밖의 연구원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- 기관명칭(충북발전연구원 → 충북연구원)변경에 따른 조례명 및 자구 수정 (안 제1조, 제2조, 제5조)
- 연구원 사업에 대한 규정 (안 제3조)
- 이사의 추천 및 임명에 대한 규정 (안 제4조)

○ 연구원 분원 설치 근거 마련 (안 제7조)

○ 연구원에 대한 연구·조사 우선 위탁 검토 규정 (안 제8조)

### 3. 의안전문 : 붙임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신구조문대비표 : 해당 없음 ※ 현행 조례 붙임

다.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
라. 협의 : 기획관리실, 충북발전연구원 검토

마. 비용추계 : 해당 없음

##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###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설립)** ①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에 충북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 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.

**제3조(사업)**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도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정책에 대한 조사·연구
2. 도, 도의회 및 시·군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·연구
3. 도, 도의회, 시·군 및 다른 기관·단체로부터의 각종 연구 사업의 수탁
4.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·협력
5. 도정발전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현안 연구
6.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

**제4조(이사의 추천)** ① 연구원의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 하되, 당연직 이사는 연구원 정관에 명시된 사람으로 한다.

② 선임직 이사로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학계·산업계·언론계·법조계·연구기관·시민단체 등에 종사하며,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인정되는 사람

2.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,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로서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
**제5조(기금)** ①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충북연구원육성기금(이하 “기금“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제1항의 기금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.

1. 도, 공공기관, 민간단체, 기업, 개인 등의 출연금
2. 그 밖의 수익금

③ 연구원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.

④ 기금은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.

**제6조(운영경비)**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기금운용의 과실수입
2. 용역수탁 등 연구사업의 수익금
3. 출판물 판매 대금
4. 그 밖의 수입

② 도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**제7조(분원 설치)** ① 원장은 도 균형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연구·조사 등 지원을 위해 연구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연구원 분원을 설치할 경우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8조(연구·조사의 위탁)** 도지사 및 시장·군수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·조사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적으로 연구원내의 위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수행이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2.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

3.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할 경우
4. 과제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**제9조(경영평가 등)** 도지사는 연구원의 경영쇄신과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운영규정)** 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.  
② 연구원의 정원, 임·직원의 보수, 기금의 관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·폐지 및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사항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11조(준용)** 연구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.

**제12조(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이사의 추천에 관한 경과조치)**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이 조례에 의해 선임된 것으로 본다.

**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2호 나목 중 “충북발전연구원”을 “충북연구원”으로 한다.

## 관계법령 발취

### □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제8조(임원의 선임) ① 이사장은 지방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
②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③ 이사(이사장은 제외한다)는 정관에 명시된 사람(이하 “당연직이사“라 한다)과 원장이 학계·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. <개정 2012.3.21.>

④ 제3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2.3.21.>

제13조(운영재원)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.

1.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
2.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
3. 그 밖의 수입금

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.

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### □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8조(지방연구원의 경영평가) ①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(이하 “경영평가“라 한다)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인회계사(회계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회계감사 결과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학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

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, 경영평가전문기관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경영평가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경영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③ 경영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한 경영평가표준안을 고려하여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정한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경영평가표준안을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# 현행 조례

##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(전문개정) 2001-02-09 조례 제 02638호

(일부개정) 2011-06-10 조례 제 3369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충북발전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와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1. 6. 10>

**제2조(재산운영 및 관리)** ①충북발전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충북발전연구원 육성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 <개정 2011. 6. 10>

② 제1항의 기금은 도와 관내 시·군(이하 “지방자치단체”라 한다)과 그 외의 출연금,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한다.

③ 연구원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 등을 교부할 수 있다.

**제3조(이사의 추천)** 연구원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2011. 6. 10 조례 제3369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